

연세대학교 이과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

연세대학교 이과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이과대 학생회 회칙(이하 '회칙'이라 칭함)과 이과대 운영위원회(이하 '이운위'라 칭함)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연세대학교 이과대 학생회 선거(이하 '선거'라 칭함)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-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이과대 학생회 선거(이하 '선거'라 한다.)에 적용하며 조항에 따라 학과·동아리연합회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.
- ② 학과 선거는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.
- ③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과대동아리연합회칙에 따른다.

제 3 조 (선거시행원칙)

- ① 이과대 학생회 선거가 본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구현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를 보통선거·직접선거·비밀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운동본부(이하 '선본'이라 한다)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선거의 시기)

- ① 본회 선거는 통상적으로 2 학기 말에 시행한다.
- ② 보궐선거의 경우 필요성에 따라 이운위에서 논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한다.
- ③ 그 밖의 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

제 5 조 (선거준비기간)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연서의 마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.

1. 선거공고
2. 연서기간

제 6 조 (선거기간)

- ①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.
 1. 입후보 등록 및 공고
 2. 유세기간
 3. 투표기간
 4. 당선공고
 5. 이의제기 기간
 6.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

② 이운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7 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.

제 7 조 (선거운동본부·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) 선거운동본부에 속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(이하 '선본원'이라 한다)은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,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·선전하거나 이를 비판·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
제 8 조 (언론단체의 공정보도의무) 본회의 언론단체는 선본 및 후보자의 의견, 토론회 등을 보도·논평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세칙 밖의 판단)

① 이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판단은 이운위에서 결정한다.

② 이선관위는 제 1 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

제 10 조 (선거권)

① 투표일 현재 본회 회원 중 재학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.

② 휴학 중인 이과대학과 이학계열 재학생 중 선관위에서 정하는 시기에 유권자 등록을 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.
(유권자 등록을 한 휴학생까지 포함하여 투표율을 계산한다.)

제 11 조 (피선거권)

① 본 회의 회원 중 후보 등록일 현재 2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사람에게 피선거권이 있다. <개정 2018.10.26>

② 휴학생의 경우 반드시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제 3 장 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

제 12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) 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이선관위'라 한다)는 선거를 본회 회칙과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특별기구이다.

제 13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

① 이선관위는 이운위에서 이운위원 중 선임한 이과대 선거관리위원장(이하 '이선관위원장'이라 한다) 1 인과 이과대 선거관리위원(이하 '이선관위원'이라 한다)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이선관위원은 이운위원 중 3 인 이상으로 이선관위원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.

③ 이선관위원장은 이선관위 구성이 이운위원으로 불가능할 경우 확대운영위원 중에서 이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
④ 3 항을 바탕으로 이선관위 구성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할 경우 이선관위원장은 재학생 중에서 이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
⑤ 이운위는 부득이한 경우 제 14 조를 준용하여 이선관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선관위는 24 시간 이내에 이선관위 구성과 구성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이선관위는 이운위의 심의를 거쳐 선거의 제반업무를 집행하는 이선관위 집행부(이하 '집행부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⑦ 이선관위원은 학과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과선관위'라 한다)의 위원(이하 '과선관위원'이라 한다) 또는 이과대 동아리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<개정 2018.10.26>

⑧ 이선관위는 과선관위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학과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.

⑨ 이운위는 이선관위의 구성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중선관위')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.

제 14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)

- ① 이운위는 제 13 조 1 항에 의해 선임된 이선관위원장을 재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.
- ② 이운위는 제 13 조에 의해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을 재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.
- ③ 이선관위원장, 이선관위원의 명단은 인준 즉시 공고되어야 한다.

제 15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) 이선관위원의 임기는 구성 이후부터 해당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 16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장)

- ① 이선관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권한을 가지며,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이선관위원장이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선관위원장 직을 승계한다.
 - 1. 이선관위는 이선관위원장 퇴위 시 24 시간 이내에 회의를 자동으로 소집하고, 1 인을 주재자로 선임한다.
 - 2. 이선관위는 이선관위원 중 1 인을 이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이운위에 상정한다.
 - 3. 이운위는 선임된 이선관위원장장을 재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.

제 17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역할)

- ① 이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.
- ② 이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7 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이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.
- ④ 이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·배부하여야 한다.
- ⑤ 이선관위는 선본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.
- ⑥ 이선관위는 제 104 조 6 항에 따라 경고를 조치한 선본의 선거 포스터에 경고장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⑦ 이선관위는 선거의 홍보와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⑧ 이선관위는 투표·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- ⑨ 이선관위는 특정 선본·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의 문화를 해치는 각종 선전물을 삭제 또는 철거할 수 있다.
- ⑩ 이선관위는 이과대 학생회 운영비를 통하여 선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며, 필요한 경우 선본으로부터 자료집·포스터와 그 밖의 선전물 제작을 위하여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.
- ⑪ 이선관위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한정하여 각 선본으로부터 일정 수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. 단, 이선관위는 해당 업무의 개시 최소 12 시간 전까지 각 선본에 모집을 요청하여야 하며, 불응하는 선본에는 주 의를 조치할 수 있다.
- ⑫ 이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 - 1. 선본·후보자의 자격박탈
 - 2. 재선거
 - 3. 선거일정의 조정
 - 4. 당선무효
 - 5.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
- ⑬ 이선관위는 이선관위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을 중선관위로 이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이선관위는 중선관위의 결정과 지시를 이행한다.
- ⑭ 이선관위는 과선관위의 구성을 보고받고, 과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지도·관리한다.
- ⑮ 이선관위는 과선관위가 이관한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의 피선거권) 이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.

제 19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)

- ① 이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이선관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 20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)

- ① 이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, 유권해석 및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② 이선관위 회의에서는 이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·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이선관위 회의는 이선관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.
- ④ 이선관위 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되, 불가피하게 표결하여야 할 경우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이선관위는 이선관위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)

- ① 집행부는 이선관위를 도와 선거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.
- ② 집행부는 제 17 조의 3 항부터 7 항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.
- ③ 집행부는 제 17 조의 제 8 항에 해당하는 선관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.
 - 1.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에 접촉하는 행위
 - 2. 기표용구에 접촉하는 행위
 - 3. 투표용지에 선관위 직인을 찍는 행위
 - 4.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행위
- ④ 집행부는 피선거권이 없다.

제 22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 이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상의 사무실을 둔다.

- 1. 신촌캠퍼스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)
- 2. 국제캠퍼스(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)

제 23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박탈)

- ① 본회의 회원은 이선관위원이 제 17 조 또는 제 19 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이운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이 발생하고 이운위 재적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운위의 의장은 3 일 이내에 이운위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단, 이운위의 의장이 이선관위원일 경우 자동으로 소집을 하며 이선관위원이 아닌 이운위 중 한 사람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하여야 한다.
- ③ 이운위는 사안의 경중과 의도성을 파악하여 해당 이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운위는 제 13 조 5 항에 따라 이선관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)

- ① 이선관위원의 과반이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이운위는 이선관위를 해체하고 24 시간 이내에 재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이운위는 해체한 이선관위에 속하였던 사람을 이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
- ③ 이운위는 이선관위를 재구성한 후 24 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 장 학과 선거관리위원회

제 25 조 (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) 과선관위는 학과 선거에서 이선관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.

제 26 조 (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)

- ① 과선관위는 해당 학과의 회칙에 따라 학과 선거관리위원장(이하 '과선관위원장'이라 한다) 1 인과 과선관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10.26>
- ② 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'과운위')는 과선관위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 7 일 전까지 구성하여 이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한다.

③ 과운위는 필요할 경우 구성 절차를 준용하여 과선관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
제 27 조(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)

- ① 학과 선거에서 이선관위와 동등한 역할을 이행한다.
- ② 과선관위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이선관위로 이관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③ 과선관위는 이관한 사안에 대한 이선관위의 결정·지침을 이행한다.
- ④ 과선관위원에게 제 16 조와 제 17 조를 준용한다.

제 28 조 (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)

- ① 학과 학생회 선거운동본부(이하 '과선본'이라 한다)와 해당 단위의 회원들은 과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 과선관위는 이의가 제기된 후 24 시간 이내에 이를 책임 있게 의논하여야 한다.

제 29 조 (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) 과선본 또는 해당 단위의 회원은 과선관위가 제 27 조 2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선관위의 결정·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이선관위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5 장 전체선거관리위원회

연석회의

제 30 조 (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지위)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는 본회의에 속한 모든 학생회 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의체이다. 이 경우 선관위는 회의체의 결정사항을 지켜야 한다.

제 31 조 (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구성) 본회의 이선관위원과 과선관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제 32 조 (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운영) 모든 과선관위원장의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선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, 이선관위원장이 주재한다.

제 33 조 (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역할)

- ① 이 세칙과 학과의 선거시행세칙을 비교·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 학생회 선거에 전반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투표용지·기표용구·기표대 및 투표함의 형태를 공유하고 확정한다.

제 34 조 (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결과 기속) 전체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의 회의 결과는 본회에 속한 모든 학생회 선거를 기속한다.

제 6 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

제 35 조 (선거인명부)

- ① 이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 일 이내로 중선관위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전달받아 확정 후 해당 과선관위에 공유하여야 한다.
-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·성별, 소속·학번·이수학기·교환학생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과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열람을 완료하면, 이선관위는 이를 확정하고 관리한다.
- ④ 선거공고 이후 투표 시작일로부터 3 일 전까지, 휴학·자퇴 그 밖에 선거권자의 신상이 변동되는 경우 이선관위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0.26>

제 36 조 (선거공고) 이선관위는 선거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7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7 조 (선거운동본부 명칭)

-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명칭(이하 '선본명'이라 한다)을 입후보 등록 시 이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선본명의 제한여부는 이운위에서 결정한다.

제 38 조 (선거운동본부 색상)

-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색상(이하 '선본색'이라 한다)을 입후보 등록 시 이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선본색의 제한여부는 이운위에서 결정한다.

제 39 조 (선거운동본부 사무실)

-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사무실(이하 '선본방'이라 한다)을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하로 둘 수 있다.
 - 1. 신촌캠퍼스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)
 - 2. 국제캠퍼스(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)
- ② 각 선본은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이선관위에 선본방의 사용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③ 선본은 입후보 등록 이전에 해당 사무실의 관리자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선본방 외에는 선본옷과 제 62 조에 해당하는 유세 선전물을 비치할 수 없다.
- ⑤ 선본원은 타 선본의 선본방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.
- 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선본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.
 - 1. 이과대 학생회 사무실
 - 2. 본회에 속한 언론단체의 사무실
 - 3. 학생총회·학생총투표·확대운영위원회 및 이과대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의 사무실

제 40 조 (입후보 등록)

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·사람은 이선관위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이선관위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단, 8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약은 9 호나 10 호에, 9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약은 10 호에 사용할 수 없다.

- 1. hwp 또는 docx 형식의 입후보 등록원서 파일과 인쇄물
- 2. 본회 재적인원 10 분의 1 이상의 추천인 서명서
- 3. 후보자 소견서 1 매(A4 용지 1 장)
- 4. 후보자의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각 1 매 <개정 2018.10.26>
- 5. 후보자 흑백사진 파일
- 6.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재적 증명서
- 7. 성명·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
- 8. hwp 또는 docx 형식의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
- 9. pdf 형식의 정책자료집(188*257mm, CMYK, 300dpi)
- 10. hwp 또는 docx 형식의 종선관위 포스터용 정책파일

③ 출마형태는 '정후보 1 인'의 형태 또는 '정후보 1 인과 부후보 1 인'의 형태로 한정한다.

④ 이선관위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.

- 1. 이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단체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선관위에서 정한 공고일 06 시까지 등록한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, 선본명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.
- 2. 선본이 등록일 18 시 이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'주의'를 조치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.
- 3. 등록일 18 시 30 분 이후에는 등록을 금한다.
- 4. 이선관위가 과실로 미비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 선본에 당일 21 시까지 통보하고 다음 날 18 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.

제 41 조 (등록무효)

- ① 입후보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본·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.
1.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
 2. 제 40 조 2 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
 3. 제 40 조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
- ② 선본·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선관위는 즉시 그 선본·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성인지 교육

제 42 조 (성인지 교육의 목적) 이선관위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,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당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선관위원과 선본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43 조 (성인지 교육의 구성) 성인지 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.

제 44 조 (성인지 교육의 대상) 이선관위는 성인지 교육을 유세 기간 동안 3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성인지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이선관위원
2. 과선관위원장
3. 후보자
4. 선본원

제 45 조 (성인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)

- ① 이선관위는 시세협에서 각 선본의 선본원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이선관위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본에게 '주의' 또는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
- ③ 각 선관위는 선관위 회의에서 선관위원과 선관위 집행부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.

제 8 장 시행세칙 협의모임

제 46 조 (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지위) 시행세칙 협의모임(이하 '시세협'이라 한다)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.

제 47 조 (시행세칙 협의모임의 구성)

- ① 시세협은 이선관위원과 이과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장(이하 '선본장'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- ② 1 항의 구성원의 동의하에 집행부 1 명을 배석할 수 있다.

제 48 조 (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역할)

- ① 이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하여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 의견을 적극 중재하여야 한다.
- ② 이 세칙은 시세협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하되, 그러하지 못한 경우 이선관위는 이 세칙에 따라 유권해석 한다.
- ③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선본방 사용을 합의한다.
- ④ 각종 공고와 선전물, 유세에 후보자의 학년과 학번 중 무엇을 표기할 지 결정한다.
- ⑤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.

제 49 조 (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운영)

- ① 이선관위원장은 시세협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시세협을 소집한다. 단, 정기소집일 외에도 긴급한 경우 시세협을 소집할 수 있다.
1. 입후보 등록일
 2. 합동유세의 전날
 3. 정책토론회의 전날
 4. 투표의 전날
 5. 개표의 전날
- ②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할 경우 각 선본의 선본장은 이선관위원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선본의 선본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세협에 참석하지 못할 시 선본장의 역할을 선본원 중 1 인에게 위임하고 해당 선본원이 시세협에 참석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선관위는 위임사유의 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선본은 반드시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이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.
- ⑤ 시세협에서의 합의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, 그러하지 못한 경우 이선관위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유권 해석 하여야 한다.
- ⑥ 선본이 시세협 또는 이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, 선본은 이를 직접 중선관위에 제소할 수 없다. 이 경우 선본은 이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선관위로의 이관 여부는 이선관위가 결정한다.
- ⑦ 이선관위는 시세협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선관위원과 각 선본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 및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9 장 선거운동

제 50 조 (선거운동의 정의)

-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 단,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,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② 본회 회원은 선본에 참여하여 선거운동본부원(이하 '선본원'이라 한다)으로서 이 세칙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제 51 조 (선거운동의 구성)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.

1. 선본·후보자의 개인유세
2. 선본·후보자의 강의실유세
3. 선본·후보자의 합동유세
4. 선본·후보자의 정책토론회
5. 선본·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선전
6. 선본·후보자의 모임과 단체 방문
7. 선본·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
8. 학내외 언론에의 보도

제 52 조 (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)

- ① 선거운동의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일 이후부터 투표전날까지로 한다.
- ② 토요일 15 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 시까지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. 단,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.
- ③ 이외 선거운동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이선관위에서 심의·결정한다.
- ④ 선거운동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학내에서만 가능하다. 단, 시세협에서 선거운동공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- ⑤ 선본이 선거운동의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이선관위는 사안의 의도성을 판단하고, 의도적인 경우 '주의' 또는 '경고' 의도적이지 아니하며 과실에 따른 경우 '주의'를 조치할 수 있다.

제 53 조 (추천인 서명)

- ① 추천인 서명(이하 '연서'라 한다)은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선본 등록의 과정이므로 본 세칙에서 규칙을 정한다.
- ②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·단체는 유권자로부터 연서를 받을 수 있다.
- ③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·단체는 연서 시 해당 선거의 언급과 정책의 기본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.
- ④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·단체는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서 연서를 받을 수 있다. 강의실 유세는 3 향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후보자를 준비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후보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연서 시작 당일 오전 8 시까지 이과대 선관위로부터 발언문을 심의받은 후 발언문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⑤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·단체는 연서 시 선본옷 착용과 유세 그 밖의 선거운동을 금한다.
- ⑥ 추천인 서명판(이하 '연서판'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해 이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·성명·약력 및 출마의 변
 - 2.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·으뜸구호·기치·표시 및 정책의 기본방향
 - 3. 이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용지
- ⑦ 이선관위는 각 연서판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일련번호 묶음은 15 개를 넘을 수 없다.
- ⑧ 이선관위는 15 개 이상의 연서판을 적발하였을 경우 해당 선본에 '주의' 또는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
- ⑨ 모든 연서판에는 이선관위 명의의 인증표식이 있어야 한다.
- ⑩ 이밖에 추천인 서명의 세부지침은 시세협에서 다룬다.

제 54 조 (선거운동본부원)

-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.
-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이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- ③ 휴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유권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. <개정 2018.10.26>
- ④ 선본원 등록기간은 첫 번째 시세협에서 결정한다.

제 55 조 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 - 1. 선관위원과 선관위 집행부
 - 2. 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사람(총학생회, 총동아리연합회, 이과대 학생회, 이과대 동아리연합회, 학과 학생회 및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의 대표자와 집행부)
 - 3. 학생총회·학생총투표·확대운영위원회·이과대 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사람
 - 4.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받은 사람
- ②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8.10.26>

제 56 조 (선거운동을 위한 사퇴)

- ① 제 55 조 1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.
- ② 이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의 마감일 7 일 전까지 사퇴서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당사자는 이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이선관위는 사퇴서 수령 후 24 시간以内에 당사자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,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사퇴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.
- ⑤ 사퇴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본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- ⑥ 사퇴서 수리기간과 선본원 등록기간은 시세협에서 결정한다.

제 57 조 (학생회 및 언론단체의 선거운동 금지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.
 - 1. 학생회 공식기구(총학생회, 총동아리연합회, 단과대학·독립학부 학생회와 과·반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)
 - 2. 본회에 속한 언론단체
 - 3. 학생총회·학생총투표·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
- ② 언론단체의 구성원은 언론단체의 소속임을 밝히거나 언론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- ③ 선본은 제 1 항에 해당하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'해당 단체'라 한다)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이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이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. 단, 이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58 조 (선거비용의 제한과 공개)

- ① 이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의 한도를 첫 번째 시세협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.
- ② 이선관위는 선본이 시세협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선본에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
- ③ 각 선본은 선거비용의 결산을 증빙자료(영수증)를 첨부해 투표 전날 09 시부터 투표 마감일 18 시까지 과학관 게시판과 이선관위 온라인 사이트에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이선관위는 제 3 항을 위반한 선본에는 '주의' 조치를, 투표 첫날 9 시까지 게재하지 아니한 선본에는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
- ⑤ 각 선본의 결산은 시세협에서 심의되며 심의 결과 결산이 미비한 경우 이선관위는 선본에 '주의' 또는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

제 59 조 (설문조사와 서명운동)

- ① 선본은 선거운동기간 중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시세협에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, 이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
제 60 조 (그 밖의 사항) 이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이선관위에서 논의한다.

제 10 장 유세 및 선전

제 61 조 (유세) 유세는 개인유세·강의실유세·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공고일 06 시부터 투표 전날 18 시까지 할 수 있다. 단, 이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.

제 62 조 (유세 선전물)

- ① 유세의 선전물은 인쇄매체·종형선전물·피켓 및 선본옷에 한한다.
- ② 이선관위는 선본의 선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의 선전물을 제거하거나 해당 선본에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고 이를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 1. 선전물의 내용을 사진·그림 및 글 등으로 구성
 2. 이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
 3. 리플렛, 신문 등의 인쇄매체는 흑백으로 제작
 4. 이선관위에서 허가한 소품만을 개인유세에 사용
 5. 이선관위의 도장을 찍어 승인
- ③ 선본의 선전물 부착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.
- ④ 인쇄매체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하며 1,2 호를 합하여 2 종, 1500 부 이하로 제한한다.
 1. 다음 각 목을 준수한 신문
 - 가. 신문은 신문용지 전판으로 하며 면수는 4 면 이하로 한다.
 - 나. 반드시 흑백으로 하며 재질은 신문용지 이하(80g 이하, 코팅금지)로 한다.
 2. 다음 각 목을 준수한 리플렛
 - 가. 리플렛의 크기는 A4(210*297mm) 3 매 이하로 한다.
 - 나. 칼라인쇄는 금지한다.
 - 다. 재질은 아트지 또는 스노우지로 하며 코팅은 금지한다.

⑤ 각 선본은 이선관위에서 정한 날 06 시부터 다음 각 호를 준수한 중형선전물을 부착할 수 있다.

1. 중형선전물은 A0 전지 2 매(840*2376mm)의 크기로 하며 모양은 그림 1 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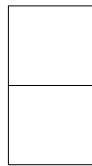


그림 1

2. 현수막을 실사로 출력할 시 색상은 총천연색 4 도 이하로 한다.

3. 중형선전물의 종류는 두 종류까지 허용하며 한 종류 당 허용개수는 이선관위 회의에서 정한다.

4. 각 선본은 이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중형선전물을 부착할 수 있다.

⑥ 각 선본은 선거운동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피켓을 사용할 수 있다.

1. 피켓의 크기는 4·6 판계열 4 절(545*788mm) 이하이며 개수는 10 개 이하, 재질은 우드락으로 한다.

2. 색상은 한 가지 바탕색과 흑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출력·부착하되 후보자의 사진은 부착할 수 없다.

3. 피켓의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중 1 회 이하로 일괄 교체할 수 있다.

4. 우천 시를 대비하여 투명한 비닐소재로 포장할 수 있다.

5. 피켓은 항상 선본원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본원이 없는 곳에 방치할 수 없다.

⑦ 선본옷은 바탕색을 한 가지 색상으로 하며 나염은 총 두 가지 색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나염은 등과 왼쪽 가슴 부위에 인쇄할 수 있다.

⑧ 모든 선전물을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이선관위의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.

2. 선본방을 제외한 장소에 배치할 수 없다.

3. 제 1 호 및 제 2 호를 어길 경우 이선관위는 유권해석에 따라 선본에 '주의' 또는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

4. 모든 부착형 선전물은 각 선본에서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06 시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여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19 시까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.

제 63 조 (정책자료집)

① 정책자료집은 각 선본에서 이선관위에 입후보 마감시한까지 제출하고 이선관위가 합본하여 출력한다.

② 정책자료집의 분량은 선본당 시세협에서 정하는 쪽수 이하로 제한한다.

③ 정책자료집의 부수는 200 부 이하로 제한한다.

④ 출판비는 이과대 학생회 운영비에서 일정 부담하며, 나머지 금액은 각 선본이 균등하게 분담한다.

⑤ 각 선본은 정책자료집에 명시한 해당 선본의 정책만을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. 단, 표현의 미세한 차이는 이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따른다.

⑥ 이선관위는 선본이 정책자료집을 개인 유세를 위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이선관위는 정책자료집을 이선관위 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부수로 배치하여야 한다. 단, 시세협에서의 합의에 따라 선본에서 일부를 배포할 수 있다.

제 64 조 (온라인 선거유세) 인터넷과 휴대폰 그 밖의 온라인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이선관위 온라인 사이트에 각 선본의 게시판을 개설한다.

2.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은 본회 회원의 의견개진과 후보자의 정보, 정책자료집, 선본의 의견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한다.

3. 각 선본은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전물의 종류와 크기, 게시 횟수, 구체적인 게시처 그 밖의 사항은 시세협에서 협의한다.

4.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에서의 프로필 사진 설정의 범위와 종류는 시세협에서 합의한다.

5. 그 밖의 사항은 이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65 조 (언론을 통한 선거유세) 언론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학내 언론단체를 통한 보도를 허용하며 그 밖의 매체를 통한 보도여부는 이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2. 학내 언론단체는 각 선본의 공약·정책을 논평할 수 있다. 단 후보자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공약·정책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66 조 (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)

- ① 이선관위는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.
- ②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의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시세협에서 정한다. 단, 급작스러운 우천 시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세협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합동유세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시세협에서 일괄적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.
- ④ 각 선본의 후보자들은 유세시간 중 발언을 할 수 있다. 단, 합동유세 시작 10 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후보자가 발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⑤ 이선관위는 선본·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합동유세의 시간을 결정한다. 단, 한 선본의 유세시간은 20 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⑥ 이선관위는 선본의 유세시간이 20 분을 초과할 시 앰프의 전원을 차단하고, 25 분을 초과할 시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 이 경후 이후 5 분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
- ⑦ 이선관위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경우 이학편집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. 추가적인 패널을 배치할 경우 시세협에서 협의한다.
- ⑧ 정책토론회는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서 각 1 회 이상 진행하며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시세협에서 정한다. 단, 급작스러운 우천 시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세협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67 조 (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중 유세 금지)

- ① 합동유세·정책토론회 시간동안 이선관위가 지정한 유세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학생회 선거유세를 전면 금한다. 단, 선본옷의 착용은 허용한다.
- ② 각 선본은 자신의 유세시간에만 유세장에 선전물을 배포할 수 있다.
- ③ 이선관위는 다른 선본의 유세시간에 선전물 배포, 깃발 흔들기, 구호 외치기 및 그 밖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본에 '주의'를 조치할 수 있다.

제 68 조 (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)

- ① 선본이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본은 이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.
- ②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강의실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해당 선본의 후보자는 다음 날 08 시부터 48 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강의실유세에서 정정발언·사과발언을 하여야 한다.
- ③ 이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, 사후 대응에 대해 '주의' 또는 '경고'를 조치할 수 있다.

제 11 장 투표

제 69 조 (투표 방법)

- ①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진행한다.
- ② 이운위는 투표의 방식을 후보 등록일까지 결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제 70 조부터 제 82 조까지의 조항을 따른다
- ④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선관위의 지시를 따른다.
- ⑤ 이선관위는 투표의 상세한 절차를 투표시행일 7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70 조 (투표구의 지정)

- ① 투표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'중앙투표구'
 2. 본회 모든 회원이 투표할 수 있는 '이과대학 투표구'
 3. 해당 학과 회원만 투표할 수 있는 '학과 투표구'
- ② 이선관위는 투표구의 구분을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71 조 (투표기간) 이운위는 선거기간 중 3 일을 투표기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제 72 조 (투표기간의 연장)

- ① 모든 투표를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%를 넘지 않는 경우, 이선관위는 투표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중앙투표구가 운영되지 않은 선거의 경우 이운위는 의결을 통하여 투표기간을 최대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연장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를 돌아오는 월요일로 변경한다.

제 73 조 (투표시간)

- ① 이선관위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② 신촌캠퍼스의 투표시간은 09 시부터 19 시까지로 한다. 단, 19 시까지 대기줄에 선 경우 투표를 허용한다.
- ③ 국제캠퍼스의 투표시간은 11 시부터 21 시까지 한다. 단, 21 시까지 대기줄에 선 경우 투표를 허용한다. 단, 마지막 투표일의 경우 19 시로 투표시간을 단축한다.

제 74 조 (투표시간의 연장)

- ① 당일 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 종료 이후 한 시간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 71 조에 따른 투표 마지막일과 제 72 조에 따른 연장일에 한하여 투표구는 22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 75 조 (투표소의 설치)

- ① 선관위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이선관위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 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투표소의 입구와 출구는 투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. 단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.
 1. 해당 투표소의 선관위원
 2. 해당 투표소의 선관위 집행부
 3.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
 4.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의 동행한 도우미
- ④ 선관위원과 선관위 집행부,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하여야 한다.

제 76 조 (투표소의 선전물)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사용법과 유의사항, 이선관위가 제작한 포스터만을 부착할 수 있다.

제 77 조 (투표자의 확인)

- ① 투표소를 관리하는 선관위원은 선거인명부를 통하여 투표자를 확인한다.
- ② 특정선본의 선본원 또는 선본원에 요청에 의하여 타인이 이중투표나 대리투표를 할 경우, 이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 회의 회원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본에 '경고'를 조치하거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제 78 조 (투표절차)

- ① 이과대학생회의 투표는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.
- ② 학과 선거의 투표는 선거권자가 속한 학과 투표구의 투표소 및 이과대학 투표구에서 할 수 있다.
- ② 투표자는 투표소를 방문하여 선관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한다.
 1. 학생증
 2. 도서대출증
 3. 재학증명서

4. 등록금 영수증

5. 그 밖의 재학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

③ 선관위원은 투표자의 명부를 확인하고 선관위 도장을 찍어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다.

④ 투표자는 배부받은 투표용지로 투표한다.

제 79 조 (투표용지)

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총학생회 선본을 기재하는 '중앙투표용지'

2. 이과대 학생회 선본을 기재하는 '이과대투표용지'

3. 학과 학생회 선본을 기재하는 '학과투표용지'

② 투표용지에는 선본의 선본명·으뜸구호, 후보자의 성명·소속 및 학년(학번)을 기재할 수 있다.

③ 투표용지에 선본과 후보자의 란은 가로병렬로 배치한다.

④ 투표용지는 만 원권 지폐의 크기(161*76mm)로 제작한다.

⑤ 이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투표용지를 제작하여야 한다. 점자투표용지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후 중선관위에 제작을 요청한다.

제 80 조 (투표함의 구분)

① 투표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총학생회 선본의 투표용지를 넣는 '중앙투표함'

2. 중앙투표소에서 투표한 이과대 학생회의 투표용지를 넣는 '단대투표함'

3. 이과대 학생회와 선본의 투표용지를 넣는 '이과대투표함'

4. 학과 학생회 선본의 투표용지를 넣는 '학과투표함'

② 중앙투표소에 위치한 단대투표함은 한 개의 투표함에 단과대학·독립학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넣는다.

③ 이과대학 투표소에 위치한 학과 투표함은 한 개의 투표함에 학과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넣는다.

제 81 조 (투표함의 봉인과 보관)

① 선관위원은 투표시간 종료 후 참관인과 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.

② 이선관위는 각 선본의 참관인과 동행하여 봉인한 단대투표소의 중앙투표함은 중선관위 사무실로, 단대투표함은 단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. 단, 개표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.

③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.

④ 선관위는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선관위원의 관리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82 조 (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) 후보자는 투표를 제외한 때에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.

제 12 장 참관인

제 83 조 (참관인의 자격)

① 각 선본은 투표소 당 1 인의 선본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.

② 참관인으로는 이과대 재적생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배치를 신고한 선본원 1 인의 성명과 선본명을 적은 명찰을 제작하여 참관인에게 배부한다. 이 경우 참관인은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④ 동일 선본 내의 다른 선본원은 명찰을 인계받아 참관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.

⑤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협의한 기한까지 이선관위에 투표소 당 참관인 명단과 다음 각 호 중 각 하나씩을 선택하여 모든 참관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적증명서

2. 학생증

3. 도서대출증

4. 등록금 영수증
5. 그 밖의 재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

제 84 조 (참관인의 역할)

- ① 참관인은 투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·참관하여야 한다.
- ② 참관인은 각 선본 간 협의에 따라 투표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참관인은 투표일 08 시 30 분까지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함을 투표소로 운반하여야 한다.

제 85 조 (참관인의 제한)

-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 1.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
 2.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선거 선전물을 소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 3. 부정행위로 보일만한 행위
 4. 그 밖에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한 행위
- ② 선관위원은 투표소에서 제 1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참관인(이하 이 조에서 '해당 참관인'이라 한다)을 즉시 제지하고 해당 참관인의 행위를 선관위에 보고한다.
- ③ 선관위는 제 2 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조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관위로부터 퇴장을 조치 받은 참관인은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.

제 86 조 (참관인의 이의제기)

- ① 참관인은 선관위에 진행상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 참관인이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, 선관위원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. 단, 한 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재개한다.
- ③ 참관인이 해당 투표소에 불참한 선본은 선관위원과 상대 선본의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13 장 개표

제 87 조 (개표의 담당)

- ① 개표는 이선관위원과 각 선본에서 개표 담당자로 차출한 선본원이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.
- ② 선본은 한 투표구의 개표가 종료될 때마다 개표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.

제 88 조 (개표시작과 순서)

- ① 투표가 종료되면 이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.
-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.
 1.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
 2. 투표자수가 유권자수의 과반에 달함
 3. 모든 투표함의 도착
 4. 이선관위원 및 각 선본의 개표 담당자의 입회
 5.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
- ③ 투표구 순서는 코드번호 역순으로 한다.
- ④ 이과대학 투표함에서 나온 중앙투표용지는 중선관위원과 이선관위원, 각 선본원의 입회하에 중앙투표함에 넣는다. 단, 중앙투표함에서 이과대 투표용지가 나올 경우 중선관위와 이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과대 학생회 선거의 개표결과에 포함한다.
- ⑤ 중앙투표소의 단대투표함은 중선관위원과 각 단선관위원의 입회하에 중선관위가 공지한 시각에 개함하고 이선관위는 중선관위가 봉인한 것을 전달받아 이과대 학생회 선거 개표장으로 운반한다.

제 89 조 (무효투표)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
-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-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
-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
-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
-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한 것
-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 도장이 없는 것

제 90 조 (유효투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.

-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
- 한 후보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
- 기표한 것이 옮겨 묻거나 인주가 묻어 훼손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지 명확한 것
-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
제 91 조 (개표일과 개표장소)

- 개표일은 이운위에서 결정한다. 단,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시세협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이과대 학생회 선거는 학과 선거의 개표와 투표를 집계 후 개표를 시작한다.
- 개표 장소는 이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
제 92 조 (오차와 오차율)

- 오차는 '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명부상의 투표자수와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실제 투표자수의 차(절대값)의 합과 이 중투표와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'이다.
- 오차율은 "오차/전체 선거권자 수×100(%)"이다.

제 93 조 (결선투표)

- 개표의 결과 득표수가 1, 2 위인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해당 두 선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
- 결선투표는 개표 후 7 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.
- 결선투표는 이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, 투표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 선본이 당선한다. 단, 개표의 결과 해당 두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결선투표를 반복한다.

제 94 조 (재투표)

-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,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.
- 재투표는 개표 후 7 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.
- 재투표는 이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, 선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표가 투표 수의 과반일 경우 당선한다. 단,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.

제 14 장 당선공고와 이의제기

제 95 조 (당선공고) 이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 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96 조 (이의제기)

- 이운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.
- 선본에서 이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본장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.
- 선본이 제 2 항을 위반하여 이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"경고"를 조치할 수 있다.
- 본회 회원은 이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.

⑤ 이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.

제 15 장 선거 부정

제 97 조 (선거 부정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.

1. 누군가 투표 방해와 대리 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
2.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
3. 후보자가 선관위, 선본원 또는 유권자에게, 선본원이 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
4. 그 밖의 위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

제 98 조 (선거 부정의 판단)

- ① 이선관위와 이운위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 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
- ② 이선관위가 누군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이운위에 '선거 부정 판단의 안'을 상정하여야 한다.
- ③ 이운위는 제 2 항의 경우 24 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여야 한다.
- ④ 이선관위와 이운위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.
- ⑤ 이선관위와 이운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⑥ 이선관위와 이운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의 선본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.

제 16 장 당선무효

제 99 조 (당선무효) 이운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.

1. 제 98 조에 따라 선본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
2. 제 103 조에 따라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
3. 당선 선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

제 100 조 (당선무효의 공고) 이운위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 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7 장 재선거

제 101 조 (재선거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. 단, 제 3 항과 제 4 항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
 1. 오차율이 5% 이상인 때
 2.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%를 넘지 아니한 때
 3. 선거 부정이 발견된 때
 4. 당선 선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
- ② 재선거가 결정될 시 이운위는 7 일 이내로 재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.

제 18 장 선거의 종료

제 102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)

① 이선관위는 선거의 제반업무를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종료한다.

1. 선본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

2. 당선한 선본이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

② 이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고 진행중인 학과 선거가 없으면 해산한다.

<개정 2018.10.26>

제 19 장 징계

제 103 조 (선거운동본부·후보자의 자격박탈) 이운위는 선본·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이선관 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·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1. 선본이 3 회의 '경고'를 조치 받은 경우

2. 선본이 이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

제 104 조 (제재조치)

① 이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.

1.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
2. 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
3.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

② 선본이 제 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
1. 선관위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24 시간 이후에 접수한 사안은 무효로 한다.

2. 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 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 시간 이내 또는 제재를 조치하기 전까지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 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한다.

3. 선관위가 A 사안에 대해 조치한 이후 발생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할 경우 이는 A 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.

③ 이선관위는 의도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본에게 주의와 경고를 구분하여 제재를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이선관위는 선본이 주의를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.

⑤ 이선관위는 선본이 3 회 이상 주의를 조치 받을 경우 경고를 조치한다.

⑥ 이선관위는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.

1. 경고장에는 경고의 사유와 조치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.

2. 경고장은 A4 용지 크기(297*210mm)로 한다.

3. 첫 번째 경고장은 바탕색에 노란색을,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을 사용하고 세 번째 경고장은 검은색을 사용한다.

4. 다음 날 08 시부터 48 시간 동안 부착한다. 단, 토요일 15 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 시까지는 선거를 중단하므로 부착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, 이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경고장을 철거한다.

제 20 장 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

제 105 조 (회계기간) 선거의 회계기간은 이선관위의 구성일로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 106 조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)

① 선거비는 이과대 학생회비 중 이과대 학생회 운영비를 통하여 조달한다.

② 이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각 선본으로부터 자료집·포스터 그 밖의 선전물 제작을 위하여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.

제 107 조 (선거운동본부의 분담금)

① 이선관위는 분담금의 액수를 선본의 입후보 등록 이후 48 시간 이내에 각 선본에 통보한다.

② 각 선본은 투표시행일의 전날 자정까지 이선관위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각 선본이 분담금을 마감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선관위는 선본에 "주의" 또는 "경고"를 조치할 수 있다.

④ 이선관위는 각 선본에 부담이 최대한 가지 아니하도록 분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108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)

- ① 이선관위는 선거의 예산을 편성하여 선거 공고일 전까지 이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운위는 선거의 예산을 심의·검토하고 이를 이과대 학생회비 중 이과대 학생회 운영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한다.
- ③ 예산의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수정할 경우 이선관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표시하여야 한다.

제 109 조 (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)

- ① 이선관위는 이운위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결산을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이선관위는 각 항목별로 결산내역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차기 이과대 학생회 집행위원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③ 이선관위는 선거의 결산을 선거의 종료일 이후 시행하는 첫 번째 이운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부칙

제 1 조 중선관위가 없을 시에는 이운위로 대체한다.

제정 17.10.11.

개정 18.10.26